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10. 11.(금)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정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통일교육주간 운영과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안 제1조)
- 통일교육 기본방향 규정 신설(안 제3조)
- 통일교육진흥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9조)
- 통일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3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¹⁾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 필요 인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통일 불필요 인식은 매년 증가하여 조사 이래 가장 높았으며, 학생들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통일 이후 사회적·경제적 부담 등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통일 필요 : (학생) ('20) 62.4% → ('21) 61.2% → ('22) 57.6% → ('23) 49.8%

* 통일 불필요 : (학생) ('20) 24.2% → ('21) 25.0% → ('22) 31.7% → ('23) 38.9%

* 통일 관심도 : (관심없음) ('20) 20.2 % → ('21) 22.4 % → ('22) 27.0% → ('23) 28.3

(관심있음) ('20) 50.5 % → ('21) 50.9 % → ('22) 47.4% → ('23) 43.7%

* 불필요 이유 : (학생)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22) 27.9% → ('23) 28.6%

(통일의 경제적 부담) ('22) 22.7% → ('23) 27.9%

○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동영상 시청과 강의(설명식 교육) 형태의 통일교육이 주로 이루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동영상 시청, 현장견학, 체험학습, 퀴즈, 통일관련 게임, 이벤트 방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8년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교육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통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임

1)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제4항에 근거, 통일부와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의 통일교육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실시됨으로써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역별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목적에 인용법령을 추가하고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법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 사료됨
- 안 제3조는 충청북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신설함
통일교육은 사상이나 이념논쟁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충청북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설정은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현행 조례는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교육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은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됨

- 안 제10조는 통일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은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따라 통일교육주간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일교육주간 운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일 필요 인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교육 추진과 관련된 주요내용들을 심의함으로써 통일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